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0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8조의3(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①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u> <u>2.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본다.</u>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6조제2항),¹⁾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58조의2)하고 있음.²⁾

그런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³⁾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⁴⁾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⁵⁾

1)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차와 우마, 즉 자동차 등의 교통운수)를 제공한 경우 현행법 제2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투표하게 할 목적이 입증 안되는 경우에는 법 제25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4)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⁶⁾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투표소까지의 교통 접근성이 낮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교통편의가 없으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큼.⁷⁾

물론,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불편지역과 중증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답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답·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임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하 생략)

- 5)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6) 데일리안(2024.4.10.), “투표소로 노인 태워줘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헤럴드경제(2024.4.9.), “투표소까지 걸어서 40분 VS 선거법 위반...투표서를 어떻게 볼까”

- 7) 일다(2022.5.31.),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③] 시설의 거주인, 교통약자는 어떻게 투표하고 있을까”

장애인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교통불편 지역은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1,678대의 지원차량을 제공하였고, 중증장애인 이동을 위해서는 총 881대의 지원차량을 제공하였으나, 강원특별자치도를 예로 들면 총 187개의 읍·면·동 중 25%에 해당하는 46개 읍·면·동만 지원되는 데 그침.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교통편의 지원현황 》

시도명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교통불편지역)				중증장애인 등 이동편의 지원		
	실시 읍면동수	노선수	이용자수	지원 차량수	활동 보조인수	이용자수	지원 차량수
합계	1,089	2,144	25,517	1,678	1,089	3,720	881
서울특별시	0	0	0	0	97	268	61
부산광역시	3	5	3	3	73	230	43
대구광역시	16	42	121	17	82	70	43
인천광역시	2	3	22	2	26	36	17
광주광역시	12	35	458	21	20	42	20
대전광역시	4	7	54	5	15	24	7
울산광역시	14	28	331	24	6	15	6
세종특별자치시	3	9	68	4	9	58	9
경기도	38	66	643	65	116	241	109
강원특별자치도	46	77	321	76	80	344	69
충청북도	90	225	1,707	121	40	197	47
충청남도	117	258	2,558	206	102	420	56
전북특별자치도	160	364	4,708	244	64	336	62
전라남도	197	396	8,092	276	55	331	45
경상북도	228	309	4,268	309	115	327	97
경상남도	159	320	2,163	305	163	537	104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26	244	86

8) 강원도 내 18개 시군 187개 읍면동 중 인구가 4천명 미만인 읍면동이 83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44%에 해당하여 인구소멸이 심각한 실정임. 출처: 연합뉴스(2025.1.6.), “강원 187개 읍면동 중 44%가 인구 4천명 미만...인구소멸 심각”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거인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이 교통편의 제공과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금권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⁹⁾ 허용되는 교통편의 제공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교통편의 제공행위(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경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공정한 선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공감하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할 기준의 모호성 등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헌법재판소 1997.11.27. 선고 96헌바60 판결]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한계로서 대두되는 最小侵害의 原則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례의 단순한 평면적 비교나 관련벌칙조항의 법정형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전체의 정치·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나 그밖의 경제적·문화적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조치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과도한 금권선거운동의 규제라는 헌법상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합헌적 규정이다.”

문 의 처

02)6788-5332
